



#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수 신 : 회원사 대표님

(참 조)

제 목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

1. 국토교통부령 제1152호( '22.09.30.) 및 연합회 화련 제332호(2022.06.17.), 제484호(2022.10.05.)와 관련 입니다.

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( '22.09.30. 시행) 되었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- 아 래 -

#### <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>

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, 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(시행규칙 별표2 제12호·비고, '22.09.30.시행)

-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

차령이 13년 이하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	차령이 13년 이상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차 :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</li> <li>○ 2차 :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</li> <li>○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</li> <li>○ 위반차량 감차 조치</li> </ul>

□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(시행규칙 제5조제3항, '22.09.30. 시행)

\* 단, '22.09.30.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이 차고지설치 여부를 검토·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□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기준을 개정 (시행규칙 [별표 6의2]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, '22.09.30.시행)

\* 단, 별표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붙임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제정·개정문 1부. 끝.  
 (상기 붙임자료는 "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ta.or.kr>) > 협회공문시달"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)



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신 해



담 당 신철호 / 부장 이지영 / 전무이사 (2022.10.05.)  
 시 행 서화2022-413호(2022.10.05.) 접 수  
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, 5층 (신천동, 교통회관) / (우) 05510  
 전화 02-415-3011~5/ 전송 02-421-3562/ ktaseoul@naver.com